

3. 교육과정 이수 특례 규정

가. 필수학점 졸업이수 기준 학점 이상 초과 취득 시 선택학점으로 인정

- 1) 대상: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필수학점을 졸업이수 기준 학점 이상 초과 취득한 학점
- 2) 처리내용: 해당 영역의 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

나.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교과목 이수 기준

- 1) 복학생의 졸업학점 이수기준: 해당 복학생의 입학년도 졸업기준
- 2) 재입학생의 졸업학점 이수기준: 재입학생의 입학년도 졸업기준
- 3) 휴학 또는 제적기간 동안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영역별 이수기준이 변경된 경우
 - 교양과목, 기초과목, 전공과목의 영역 기준 변경 시, 영역 단위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
 - 과목별 선택과 필수 이수 구분 변경 시, 과목별로 학생에게 유리한 이수 구분 적용

4) 재입학생 학점인정 및 취득

가) 재입학 전 우리대학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함

나) 재입학생은 재입학 전·후 학기를 통산하여 8학기(건축학과 10학기) 이상 등록하여야 함

(※교육과정 변경으로 재입학 전 취득 학점이 졸업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됨)